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교진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법령에는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를 입학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이 평가자와 사전 모의 등의 중대한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해당 학생의 입학을 취소할 근거가 없는 등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입학취소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로 평가자와 부정하게 사전 접촉한 경우를 명시하여 입학허가 취소를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입시비리·부정에 엄중하게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사정관(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외의 입학전형자료로 학생을 선발할 때 외부에서 위촉된 평가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부터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에 출제될 문제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입학사정관에게 대학별고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는 등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포함(안 제35조제1항, 제42조의4제3호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1. 19. ~ 12.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1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2조의4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사정관(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외의 입학전형자료로 학생을 선발할 때 외부에서 위촉된 평가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부터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에 출제될 문제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입학사정관에게 대학별고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는 등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 ----- ----- ----- ----- ----- ----- ----- ----- ----- <u>말한 다. 이하 같다)</u>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의4(입학허가의 취소) 법 제34조의6에서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42조의4(입학허가의 취소) --- ----- ----- ----- ----- ----- ----- -----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신 설>

3. (생략)

_____.

1. 2. (현행과 같음)

3.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사정관(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외의 입학전형자료로 학생을 선발할 때 외부에서 위촉된 평가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부터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에 출제될 문제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입학사정관에게 대학별고사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하는 등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현행 제3호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제처 행정법제국	
연 락 처	(044) 200 - 6616